14. 중공업 소속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립선 암,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성별
 남성
 나이
 만 72세
 직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 개 요

근로자는 □중공업에 입사하여 1982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19년 10개월간 수리조선부 수리직 및 탑재과 취부직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산업 등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간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9년 2월부터 어깨와 척추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여 2019년 5월 △의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하였으며 골모세포 골전이 의심 소견을 보였다. 이에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혈구감소증에 대해 골수검사 및 전립선조직검사 결과 72세가 되던 2019년 5월 23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으며 골스캔 결과 파종성 골 전이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2022년 4월 5일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약 19년 10개월 동안 수리선박 전처리공정에서 근무하며 녹 연마에 따른 철분진과 중금속, 전처리도장 작업에 따른 페인트, 신나, 에폭시 및 중화제, 용접 작업 시 용접 흄에 노출되었고, 약 3년간 강관 파이프제조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22년 05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 작업환경

근로자는 □중공업 ☆공장에서 1982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19년 10개월간 선박 수리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였으며 근로자 측에 의하면 주6일 출근 중 5일은 2시간 이내로 잔업하였다. 그 후 ◇산업 등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간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2교대였으며 주간조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 야간 조 근무시간은 2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자 측에 의하면 조선소에서 도크에 수리 선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녹이나 기타 불순물 제거를 위한 샌딩, 블라스팅 작업과 강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한 분사연마,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밀폐된 탱크 공간(유류, 식수탱크 등)에서 용접작업, 선박의 기계 수리·점검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크에 선박이 없는 경우에는 도크 점검 수리 및 녹 제거 작업, 부분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여러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선박 수리 및 전처리 도장 작업과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사상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보호구 착용이 소홀하여 각종 중

금속과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선박 수리 사업장과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보호구 착용이 소홀하였다.

3 →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2월부터 어깨와 척추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여 2019년 5월 △의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하였으며 골모세포 골전이 의심 소견을 보였다. 이에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혈구감소증에 대해 골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72세가 되던 2019년 5월 23일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eason score 8)을 진단받았으며 골스캔 결과 파종성골 전이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2022년 4월 5일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과거흡연자로 10년간하루 10개비를 흡연하였고 술은 주 1회 소주 3잔을 마신다고 2015년 건강검진에 기록되어있었다. 의무기록에는 40년간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고 10년 전 금연하였다고 기록되어있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2017년 05월 16일 비특이성요도염, 2019년 5월 3일 착추의 악성신생물 수진 내역이 있었다. 근로자는 어깨, 무릎,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수 수진하였다. 2019년 3월 오른쪽 무릎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망 ○○○(남, 1947년생)는 만 72세가 되던 2019년 5월 23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으며 골스캔 결과 파종성 골 전이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2022년 4월 5일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중공업에 입사하여 1982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19년 10개월간 수리조선부 수리직 및 탑재과 취부직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산업 등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간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교대근무기간이 3년 8개월로 짧으며 그밖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용접흄, 유기용제는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의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